

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2월 16일, 박창욱 의원 외 15명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1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

(2024년 2월 27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창욱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자연재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잦아짐에 따라 피해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폐기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,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재해피해농가 지원 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재해피해농가를 위한 지원사업 및 대상을 규정함(안 제5조~제6조)
- 재해피해 긴급대책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-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(안 제8조~제9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진영)

가. 본 조례안은

- 자연재해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
- 안 제3조는 불가피한 자연재해로부터 도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 및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고,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함.
-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,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됨.
-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인 농업경영체의 충족 요건을 규정함.
- 안 제7조는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대책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.

- 안 제8조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9조는 재해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·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.
- 안 제10조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함.

다. 종합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- 행정안전부의 '2022년 재해연보' 를 보면,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자체는 경상북도로, 인적·물적피해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<2022년 시도별 재산피해 현황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피해액	592,656	69,630	11,824	31	1,696	174	2,555	6,932	374
비율(%)	100	11.749	1.995	0.005	0.286	0.029	0.431	1.170	0.063

구분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피해액	159,640	37,911	1,525	62,334	9,265	7,308	206,768	12,427	2,262
비율(%)	26.936	6.397	0.257	10.518	1.233	1.233	34.888	2.097	0.382

- 지구온난화 등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일상화·대형화되고, 이로 인한 냉해·태풍·우박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,

- 단순한 응급 복구와 일시적인 생계 구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자연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,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아울러,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「없음」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